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20가단2165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성승용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이미정

변론 종결 2021. 1. 29.

판결 선고 2021.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개명 전 C) 사이에 2016. 5. 18.경 체결된 금전증여계약은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B(개명 전C)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회사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소외 회사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각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각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아래

구분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과목	연대보증인
1차보증	2009. 6. 18.	100,000,000	2016. 12. 9.	2009. 6. 23.	100,000,000	기업일반자금대출	B
2차보증	2016. 6. 15.	124,950,000	2016. 12. 9.	2016. 6. 16.	147,000,000	기업일반 운전자금대출	B

나. E은행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각 대출일자에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각 대출과목으로 각 대출금액을, 각 보증기한을 변제기한으로 하여 소외 회사에 대출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11. 22.경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각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E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여, 원고는 2017. 3. 24. 위 각 보증으로 인한 연체 대출원리금 합계187,763,6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소외 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합계187,763,666원, 위약금 합계 984,750원, 채권보전비용 601,285원의 합계 189,349,701원및 그 중 각 보증 대위변제금 합계 187,763,666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7. 3.24.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이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35192호로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5. 15.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와 B는 1997. 7. 10. 혼인하였고 자녀 2명을 두었다. 피고 부부는 B 명의로 F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B의 외도로 피고 부부가 갈등을 겪던 중 B는 2014. 8. 31.과 11. 20.경자신의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이혼 요구시 그의 요구와 조건을 따른다는 취지의 각서를 2차례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2015. 8. 19.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B의 부정행위는 계속되었고, 2015년 말부터 구체적으로 이혼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자녀들 양육은 피고가 맡기로 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기존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피고가 2016. 5. 18. 새 소유자 I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700,000원, 기간 2018. 4. 2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는 계속 갱신되어 유지되고 있다. 피고와 B는 2016. 8. 9.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고, 12.12. 이혼신고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피고의 다툼

가. 원고의 주장

B가 2016. 5.경 약 1억 8,900만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사실상 증여(이하 원고 주장과 같이 이를 이 사건 증여라고 칭한다)한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1억 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다툼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 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당시 대부분 존재하지 않았고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지도 않아 피보전채권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아니며, 피고에게 귀속될 재산분할 및 위자료 1억 원은

피고에게 대단히 부족한 금액이지 상당성을 초과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0. 10.10. 선고 2000다27084 판결 참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원고의 피보전 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상당 부분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지도 않아 피보전 채권이 인정될 수 없고, 나아가 그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 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일 즉 이 사건 증여일자는 2016.5. 18.경인 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약 1년 후인 2017. 3. 24. 발생한 것으로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증여 당시 존재했던 신용보증약정은 2009. 6. 18.자 1차 신용보증약정에 한하고, B의 이자 연체가 발생한 것은 2016. 11.22.로 이 또한 이 사건 증여 이후이다. 이 사건 증여 당시 B의 재무상태가 특별히 어려웠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약 5~6개월 이후 연체 등록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원고의 대위변제 무렵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증여에 대한 기초적 법률관계, 즉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 부부관계에 파탄이 심화되어 이혼이 이루어질 경우의 장래의 재산분할의 약정은 이미 2014.8.경부터 시작되었고, B는 2015. 8.경 위자료 5,000만원의 지급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 사건 피보전 채권 발생 훨씬 이전의 일이다.

③ 피고는 B와 실제 이혼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부양하기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하였는데, 이는 피고와 B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다.

④ 피고가 B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 및 위자료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유일한데, 그 마저도 혼인기간 중이거나 그 이전에 B가 단독으로 전액 형성하거나 부담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⑤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피보전채무 등 대부분의 B의 채무는 일상가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개인채무(상당 부분 별거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로 보이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